

의안 번호	2957
----------	------

제303회 서울특별시의회(정례회) 의사일정

회 기 : 2021. 11. 1.(월) ~ 12. 22.(수) <52일간>

의사일정

일시	부 의 안 건	비 고
11. 1.(월) 14: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개회식 1. 제30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. 제30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. 서울특별시장과 서울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4.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(시장·교육감) ※ 본회의 휴회결의 : 11.2 ~ 11.15 <14일간>	
11. 2.(화) ~ 11.15.(월)	1. 행정사무감사(각 상임위원회별) <14일간>	본회의 휴 회
11.16.(화) 10:00	1. 교섭단체 대표연설 2.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	
11.17.(수) 10:00	1.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	
11.18.(목) 10:00	1.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※ 본회의 휴회결의 : 11.19 ~ 12.15 <27일간>	
11.19.(금) ~ 12. 2.(목)	1. 상임위원회 활동(각 상임위원회별) <14일간> ※ 운영위원회 활동(12.2)	본회의 휴 회
12. 3.(금) ~ 12.15.(수)	1.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<13일간>	
12.16.(목) 14:00	1. 안건처리(2022년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등) ※ 본회의 휴회결의 : 12.17 ~ 12.21 <5일간>	
12.17.(금) ~ 12.21.(화)	1. 상임위원회 활동(각 상임위원회별) <5일간>	본회의 휴 회
12.22.(수) 14:00	1. 안건처리	

※ **회기 전체 의사일정**은 본회의 개의일시 및 심의대상 안건의 대강을 기재한 것으로 본회의 심의 대상 안건은 **당일 의사일정**으로 정하며,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, 의장이 각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당일 의사일정의 안건 추가 및 순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.
(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, 제16조)